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000호

의 안 명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의 결 일 2019. 5. 27.

주 문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5월 2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2019. 5.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 배경	1
II . 제도 현황	2
III . 문제점	4
1.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를 위한 규정 미비	4
2. 징계처분 결과의 피해자 통보 근거 부재	5
IV . 개선방안	7
1. 징계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장치 마련	7
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지 의무화	9
V . 조치사항	10
[붙임] 징계 관련 법령	11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는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등 혐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
 - 징계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징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부여
 -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 그러나, 성추행, 폭행 등 비위 유형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등은 미흡
 -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
 -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군인 징계령 제10조 제1항)
 - 또한, 가해자인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
 - ※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성범죄·성희롱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인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근거 마련('19.4.)
- 이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참여 보장, 징계처분 결과 등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18.9.7.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8.9.28.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협의 : ~ '19.5.10.

Ⅱ. 제도 현황

□ 징계관련 법령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절차 등은 직종별 징계 관련 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

구분	직종별	적용 법령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령 등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군인	·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등

□ 징계사유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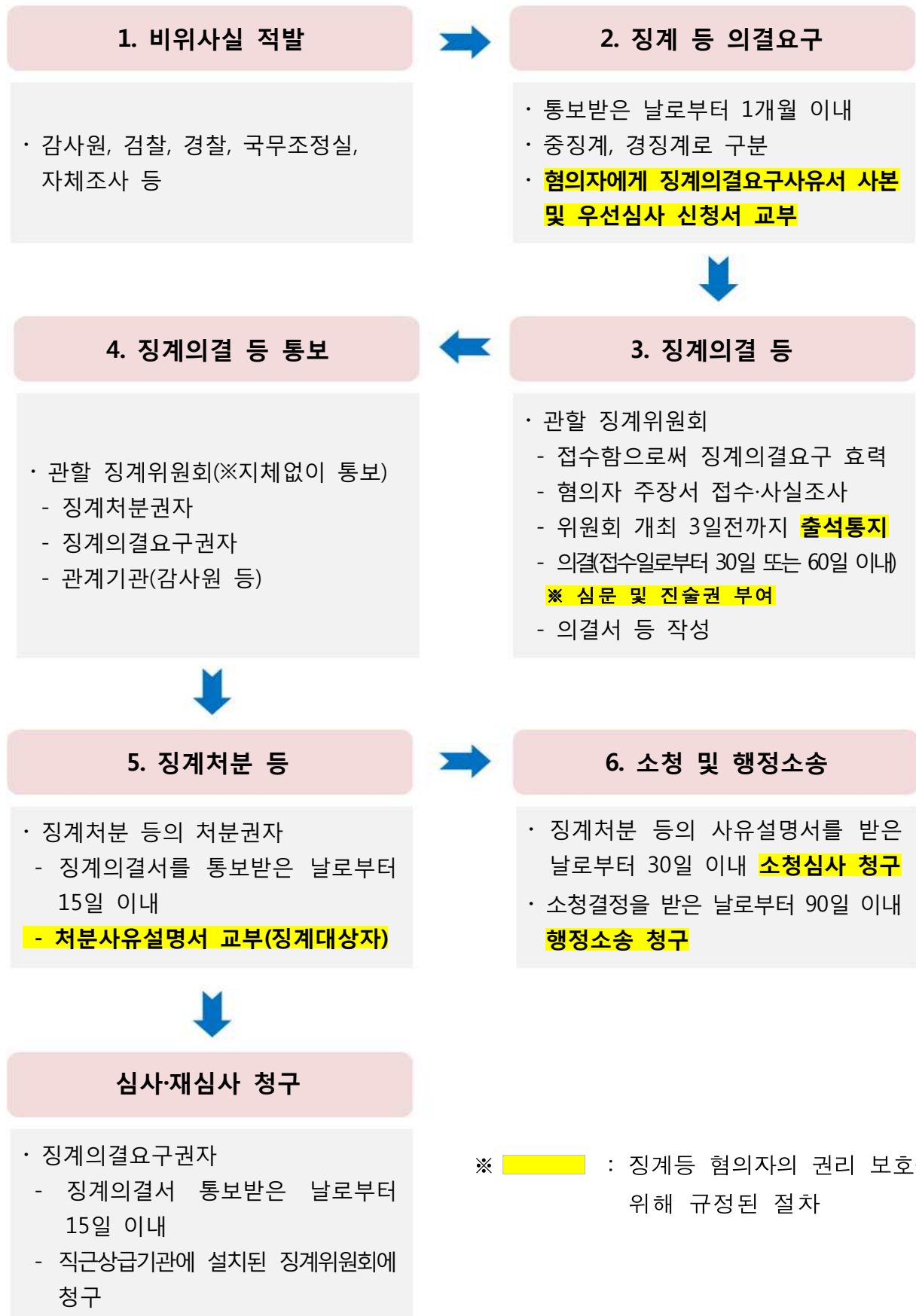
- 징계 사유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 63조)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단위 : 명, 2018 인사혁신통계연보)

구분	계	복무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관련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등 수수	기타
2013	2,375	381	1,198	25	24	9	174	35	21	56	271	181
2014	2,308	410	1,162	18	8	10	153	40	14	20	172	301
2015	2,518	451	1,397	20	20	9	159	40	16	33	179	194
2016	3,015	299	2,032	11	4	11	154	34	24	39	123	284
2017	2,344	286	1,589	15	7	6	105	19	9	23	95	190

※ 품위손상 유형(예시) : 성범죄, 성희롱, 폭행 등

□ 징계절차



Ⅲ. 문제점

□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규정 미비

- 각종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처분사유서 교부 등의 절차 명문화

※ 징계등 혐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공무원 징계령 예시)

구분	내용	비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송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영 제7조 제7항
출석 통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영 제11조 제2항
처분사유서 교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영 제19조 제2항

- 반면, 징계혐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현행법령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행위)

· 징계위원회는 ...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영 제11조 제1항)

- 또한, 징계등 혐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 관계인에 대한 출석통지서 송달, 기일 지정, 방법 등 세부절차도 부재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19.4.16)

□ 징계처분 결과의 피해자 통보 근거 부재

- 형벌절차와 달리 징계절차의 경우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

【 민원 사례 】

- 신청인은 군 복무를 하던 중 대대장의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의 피해를 입었고, 대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00본부 징계법무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징계 항고심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고심 전날 통지 받고 새벽차를 타고 항고심에 겨우 참석. 가해자에게는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위원회 고충민원, '18.3월)

- 00기관에서 근무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음. 그 이후 가해자인 직장상사의 징계절차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원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고, 가해자의 요청대로 사안이 흘러가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18.2월)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소속 간부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해당 간부를 헌병대에 신고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사건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음. 법무실에 문의하였지만 그것을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함.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볼 권리도 없는 겁니까?

(국민신문고, '18.6월)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18.9월)

-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수소문하는 것은 힘들뿐더러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피해자도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징계 내용을 공지받아야 ‘사건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것

(언론보도, '18.3월)

-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18.9.)되었지만, 통보 대상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

※ 폭행, 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는 여전히 징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

【참고】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생략)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IV. 개선방안

□ 징계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장치 마련

- 징계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의견진술 절차 등 사전 통지 의무화

* 성범죄·성희롱, 폭행·상해,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피해자 등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경찰·소방·교육·군인 징계령 개정

현행	개선 (예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신설>	「경찰공무원 징계령」 - 좌동 - 제13조의2(피해자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법 제00조제0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참고 법령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형사소송법 등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7. 6. 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지방공무원법)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 (경찰·소방·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근거 신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6개 법률 개정

현행	개선(예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략)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좌동)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형법」 제2편제25장에 따른 <u>상해와 폭행의 죄</u>,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u>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에</u>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V. 조치사항 및 기한 등

□ 권고대상 기관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 조치사항

과제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징계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장치 마련	○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 사전 통지 의무화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군인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지 의무화	○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근거 신설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 조치기한 : 2020년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9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정 본 입 니 다 .

2019년 5월 28일

국 민 권 의 위 원 회

